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제품이 다양하고 여러 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만 인정되어 타법에 따른 신기술은 사용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 종류 확대(안 제24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 1)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제품이 다양하고 여러 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만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제품으로 인정되어, 타법에 따른 신기술은 사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
- 2)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 가능한 수도용 자재·제품에 산업신기술만 인정하던 것을 산업, 환경, 건설, 재난 등 11개 분야 신기술(NET)로 확대함
- 3) 수도용 자재·제품의 신기술 인증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타 분야의 신기술 활성화 및 신속한 시장 진입, 추가 인증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지정을 받은 제품
-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 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 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 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
 - 아.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지정
 - 자.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수산물신기술 인증
 - 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 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 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 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 을 받은 제품	5.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지정을 받은 제품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6. 삭 제 7. (생 략) ② (생 략)	<u>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u> <u>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u> <u>지정</u> <u>아.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u> <u>제3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지정</u> <u>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u> <u>제17조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u> <u>인증</u> <u>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u> <u>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u> <u>목재제품 신기술 지정</u> <u>카. 「농업기계화 촉진법」</u> <u>제7조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u> <u>지정</u> <u>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u> <u>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u>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연 락 처	044-201-7157